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2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김정호·전재수·정성호

신정훈 · 김병욱 · 김경협

김교흥 • 박재호 • 양경숙

서동용 · 신현영 · 강선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을 두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소득공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마련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엔젤투자 등의 집중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세제지원 기한이 올해로 종료되어 투자자 유인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기한을 거주자가 출자일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벤처투자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2년 이"를 "3년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2020년</u> 12월 31일까	<u>2023년</u>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	
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	
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	
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	
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	
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
자 후 <u>2년이</u>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
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
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
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sim 6.	(생	략)
--------------	----	----

2	\sim	4	(생	략)

<u>3년이</u>
<u>.</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